

##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

###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83
--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5. 30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유관기관의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임기 등 명시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유관기관의 명칭 변경(조례안 제2조제2항제3호, 제6호, 제3항)

- 제7765부대 제4대대장 → 제7765부대 제3대대장
- 국군 제710군사안보지원부대장 → 국군 제353방첩부대장
- 위촉직 위원 임기 명시

나. 인용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

#### 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문대비표: 따로 붙임

#### 4. 근거법규

가.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 및 제9조

나. 「통합방위법시행령」 제8조

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15715호, 2024. 4. 15.)
- 라. 입법예고: 2024. 4. 15. ~ 5. 7.(22일간) / 의견없음
- 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#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 중 “제4대대장”을 “제3대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제710군사안보지원부대장”을 “제353방첩부대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기관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, 제2항제1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협의회는 심의안건, 발언내용,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.

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(연임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임기) ① (생략)        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          3. 육군 제7765부대 <u>제4대대장</u>          4. · 5. (생략)          6. 울산지역 국군 <u>제710군사안보지원부대장</u>이 추천하는 관계자          7. ~ 12. (생략)  <u>③ 의장,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기관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제3조(협의회 운영) ① · ②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② -----          -----.          1. ·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3. ----- <u>제3대 대장</u>          4. ·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6. ----- <u>제353방첩부대장</u>-----          --          7. ~ 12. (현행과 같음)  <u>③ 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기관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, 제2항제1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3조(협의회 운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협의회는 심의안건, 발언내용,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.</u></p>

제5조(간사) ① · ② (생 략)

③ 간사는 협의회 의장의 명을  
받아 사무를 처리하되, 협의회  
회의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을  
작성하여 비치.보관하여야 한  
다.

제5조(간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## 근 거 법 규

### □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

제8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시·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2.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3. 국가정보원의 관계자
4. 지방검찰청의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5.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6.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
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8.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
9.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
10. 교육감 또는 교육장
11. 지방의회 의장
12.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
13. 지역 재향군인회장
14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
##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의 명칭 변경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.

#### 3. 작성자

- 소 속: 안전총괄과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
- 이 름: 성낙은
- 연락처: (052)290-4071